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의 일반직(사회복지직) 전환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직명을 삭제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별정직 직명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